

위 임 장

본인은 2019년 9월 7일에 개최되는 사단법인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「임시총회」에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기에 본 총회에서 심의·의결되는 다음 의안 및 결과에 대한 권한 일체를 총회 의장에게 위임합니다.

- 다 음 -

제1호 의안

학회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을 통한 학회 사무실 매입의 건

제2호 의안

학회 정관 변경의 건

변 경 전	변 경 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3조(소재지) 본 학회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82 공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문화재보존과학과 413호에 둔다.	제3조(소재지) 본 학회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 864, 605호에 둔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31조(재산의 구분) 1.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 ① 기본재산은 본 학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	제31조(재산의 구분) 1. ----- ① 기본재산은 본 학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하며 그 목록은 “별지1”과 같다. ② ----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신설>	<p>[별지1]기본재산 목록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소재지</th> <th>면적 (㎡)</th> <th>평가액 (원)</th> <th>출연자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건물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대지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현금 (예치금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출연금</td> </tr> <tr> <td>합계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소재지	면적 (㎡)	평가액 (원)	출연자	비고	건물						대지						현금 (예치금)					출연금	합계					
구분	소재지	면적 (㎡)	평가액 (원)	출연자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
건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현금 (예치금)					출연금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위임인

성 명	(인)	소속·직급(직위)	
연락처		주소	

2019년 월 일

(사)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회장 귀하

※ 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스캔 후 본 학회 메일 conservation@conservation.or.kr 으로 회신바랍니다.

